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47)

2. 제안이유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조정 및 구의회 의정 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2조 정원의 총수 및 구의회사무기구 정원 개정
 - 정원의 총수: 1,448명 → 1,457명 (+9명)
 - 집행기관의 정원: 1,419명 (변동없음)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9명 → 38명 (+9명)
- 정원의 총수 개정에 따른 별표3 개정
 - (기관별) 사업소 5급 1명 → 0명 (△1)

- (직급별) 본청 5급 36명 → 37명 (+1명)
- (직급별) 일반직 계 1,437명 → 1,446명 (+9명)
- (직급별) 6급이하 계 1,364명 → 1,373명 (+9명)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3. 11. 2. ~ 11. 7. (제출된 의견 없음)
- 정원 9명에 대한 추계비용 발생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조정 및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개정내용

- 가. 사업소 5급 정원 1명감하고 본청 5급 정원 1명 증
- 나. 구의회사무국 총 정원 9명 증 (※ 정책지원관 정원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448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457명</u> ----- -----.

1. (생략)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9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448	1,448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437	1,437				
(현행과 같음)						
5급	63	36	1	9	1	16
6급이하계	1,364	1,36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38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57	1,457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446	1,446			
(현행과 같음)					
5급	63	37	1	9	16
6급이하계	1,373	1,373			
(현행과 같음)					

6.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현 정원의 총수 1,448명을 1,457명으로 증원을 통해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9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마포중앙도서관을 관장하는 사업소 폐지에 따른 도서관장 5급 정원 1명을 감하고 본청 직원 5급 정원 1명을 증하는 내용은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마포중앙도서관은 독립된 사업소에서 교육지원과로 통합되어 6급 팀장이 관리함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는 도서관 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일부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